

2022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

9월1일 부터 15일까지 신청하세요~!

반기신청·지급제도

근로소득자에 한하여 반기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상·하반기별로 신청·지급하는 제도



신청방법

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

아래 방법 중 하나를 선택

① 손택스(모바일앱)

홈택스 모바일앱  을 다운로드

② 자동응답전화(ARS)

 1544-9944

③ 홈택스(인터넷)

www.hometax.go.kr

④ 근로장려금 상담센터

 1566-3636

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

🔔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하셨더라도
신청요건(뒷면 참조)이 충족된 경우
아래의 순서에 따라 신청하세요

① 홈택스(모바일 앱·PC) 접속 후
로그인 하기

② 신청·제출 > 근로장려금(반기)
> 일반 신청하기

🔔 아래 QR코드를 스캔하시면
신청요건 및 방법을 동영상으로
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

신청요건 동영상



신청방법 동영상



국세청
National Tax Service

'22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요건

반기신청 안내

- 근로장려금은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이 있으며, 둘 중 **하나만 신청**하실 수 있습니다.

구 분	대상자	소득발생	신청기간	지급기한	지급액
선택	반기 신청	근로소득자	'22년 상반기	'22.9.1.~15.	'22년 12월 말
					예상 연간 산정액의 35%
	정기 신청	근로·사업· 종교인소득자	'22년 하반기	'23.3.1.~15.	'23년 6월 말
			'22년 연간	'23.5.1.~31.	'23년 9월 말
					연간 산정액의 100% - 상반기 지급액
					연간 산정액의 100%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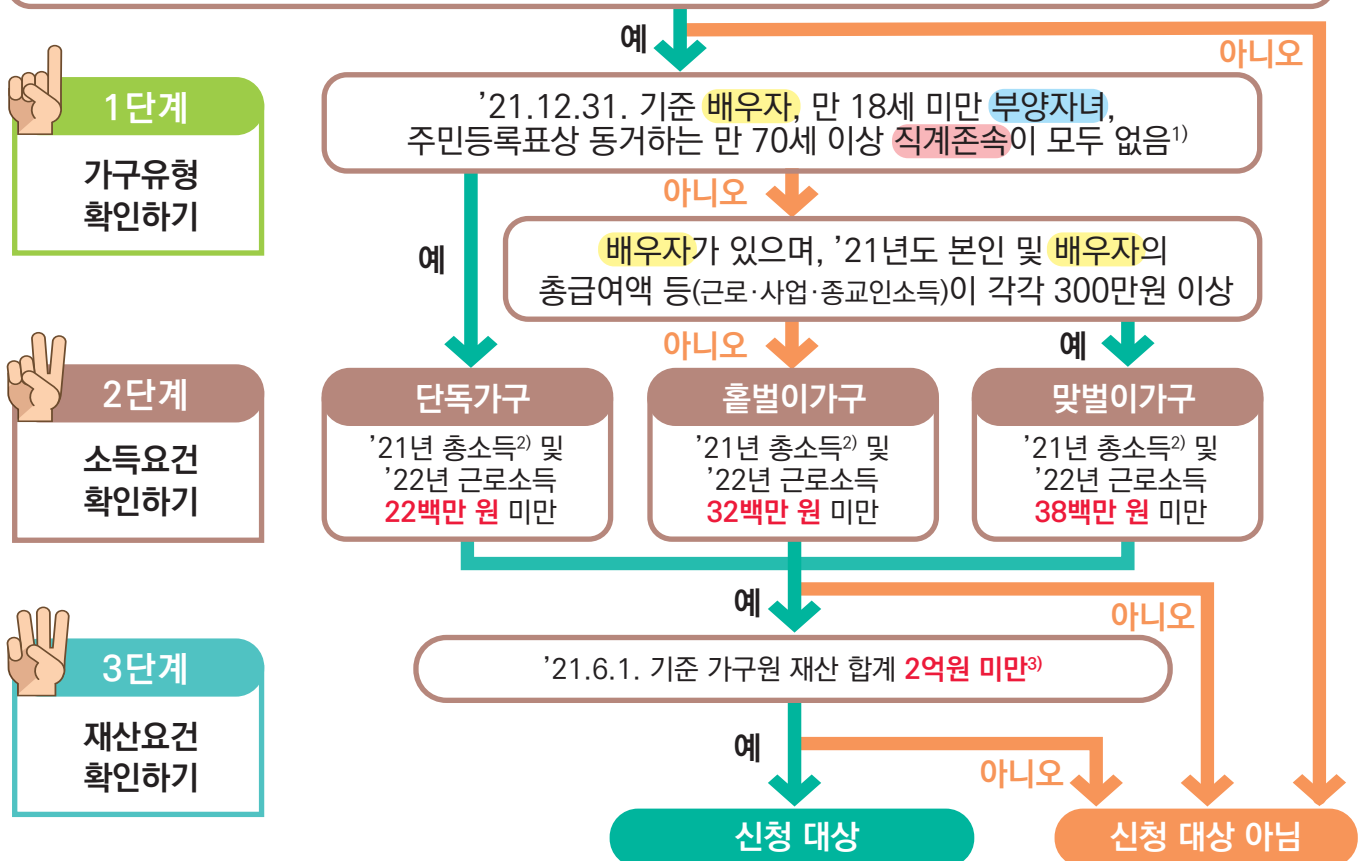
* 다만, 근로소득 외 소득이 있는 신청자(배우자 포함)는 '23.8월(지급기한: '23.9월 말)에 심사하여 지급합니다.

신청요건

- 아래 가구유형별로 1가구에서 1명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2022년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로서 아래 가구유형별 총소득·재산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.
-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'21년 귀속 가구·총소득·재산 기준에 따라 12월에 예상 연간 산정액의 35%를 먼저 지급하고, '23년 6월에 '22년 귀속 가구·총소득·재산 기준을 반영하여 근로장려금을 확정하는 정산 절차가 있어 근로장려금을 추가 지급하거나 환수할 수 있습니다.

반기 근로장려금 검토표

신청인 및 배우자가 2022년에 근로소득만 있습니까?



1) 부양자녀·직계존속(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)은 연간 소득금액 1백만원 이하일 것

2) 연간 총소득 : 신청인과 배우자의 근로·사업·종교인·이자·배당·연금·기타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

3) 주택·토지·건축물·승용차·전세금·회원권·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·금융재산(부채는 차감하지 않음)